

영등포구의회  
제15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4. 15.

行政委員會

專門委員 李憲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262호로 2010년 3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개정이유

과학문화도시인 영등포구의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과학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학인재양성사업의 추진 근거 규정 마련. (안 제22조)
- 나.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키고자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추진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3조)
- 다.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4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과학교육진흥법, 과학기술기본법.
- 나. 예산조치 : 2010년도 편성예산으로 추진가능.

## 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추진사업과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가. 안 제22조는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  - 나. 안 제23조는 과학문화확산사업을 위한 사업과 필요시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 - 다. 안 제24조는 과학육성사업 추진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등 문제점은 없음.

# 관 계 법령

## 과학교육진흥법

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
  2. 과학교원의 양성·확보·처우 및 교육
  3. 과학교재·교구의 개발·보급 및 실험·실습시설의 확충
  4. 과학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
  5.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구축
  6. 과학관의 설치·운영
  7. 실험·실습비,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
  8. 과학교육연구단체의 지원
  9. 청소년 과학행사의 개최와 지원
  10. 그 밖에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
- ②국가는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
## 과학기술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 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(전문개정 2010.2.4)